

장애등록 관련

목 차

⇒ 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등급	2 ~ 5
⇒ 장애인 등록절차	6 ~ 16
⇒ 각종 할인 및 감면(공제)	17 ~ 25

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등급

1.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

▣ 장애인복지법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장애범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정책에 기초가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장애인의 개념과 별도로 중증장애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를 말하며, 이를 현행법 상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정범위 및 중증장애인 범주는 <표 1>과 같다

<표1> 장애인 인정범위 및 중증장애인 범주

구분		장애 등급							
		1	2	3	4	5	6	7	8~14
장애 인 복 지 법 상 분 류	지체장애	○	○	○					
	뇌병변장애	○	○	○					
	시각장애	○	○	○					
	청각장애	X	○						
	언어장애	X	X			X	X		
	지적장애	○	○	○	X	X	X		
	정신장애	○	○	○	X	X	X		
	자폐성장애	○	○	○	X	X	X		
	신장장애	X	○	X	X		X		
	심장장애	○	○	○	X		X		
	호흡기장애	○	○		X	X	X		
	간장애	○	○		X	X	X		
	안명장애		○			X	X		
	장루·요루장애		○				X		
간질장애		○			X	X			
국가유공자	○	○	○					X	

※ ○표시는 중증장애인을 표시 / X표시는 해당 등급이 없음을 표시 / 지체장애인 3급 중 ○표시 부분은 상지장애인을 나타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3항에 규정하였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기준 중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는 삭제됨 [2004. 6. 5, 시행일 2005. 1. 1. : 제3조제3호]

2. 장애유형별 정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로 인정되고 있는 15개 유형의 장애 유형정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12개 유형) 정신적 장애(3개 유형)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서 다시 신체적 장애는 외부기관의 장애와(6개 유형) 내부기관의 장애(6개 유형)로 나눌 수 있다

<각 유형의 장애정의>

관련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원용)			특수교육진흥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5유형)	세분류	소분류(6유형)
신체적 장애	외부장애 (외부기관의 장애)	지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단장애 관절기능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및 단축 	자체부자유
		뇌병변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추신경손상장애 	-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력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장애 음성장애 	-
	내부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
		호흡기장애	-	-
		간장애	-	-
		장루·요루장애	-	-
		간질장애	-	-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	지적장애	
	정신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정서장애 (자폐성 포함)	
	자폐성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폐증 	학습장애	

■ 신체적 장애인 I : 외부기능 장애인

》 지체장애인 (1~6급)

-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왜소증 포함)

》 뇌병변장애인 (1~6급)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시각장애인 (2~6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청각장애인 (2~6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dB)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이하의 사람
-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장애인 (3~4급)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안면장애인 (2~4급)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신체적 장애인 II : 내부기능 장애인

》 신장장애인 (2급, 5급)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심장변장애인 (1~3급, 5급)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 호흡기장애인 (간기능 장애인 1~3급, 5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간장장애인 (간기능 장애인 1~3급, 5급)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장루·요루 장애인 (2~5급)

-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간질장애인 (2~4급)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정신적 장애인

》 지적장애인 (1~3급)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 **정신장애인 (1~3급)**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자폐성장애인 (1~3급)**

- 자폐성장애(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유형별 정의 장애인 인정범위 및 중증장애인 범주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제도의 목적

장애인의수, 장애인의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 2011년도부터 신규 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 (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재외국민(국적자)

▣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2. 등록대상

-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자폐증),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간질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후유 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 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 등록 간주 처리

3.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 등록절차

등록 신청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신청인이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2.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3. 장애검진의료센터(병·의원)에서 장애진단 검사 및 장애진단서 발급
(진단서류 등을 의료기관이 직접 읍·면·동주민센터에 통보)
4. 신청인이 읍·면·동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 등 제출
5.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요청
6. 국민연금공단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애심사결과 통보
7. 장애인등록증 발급
8. 기타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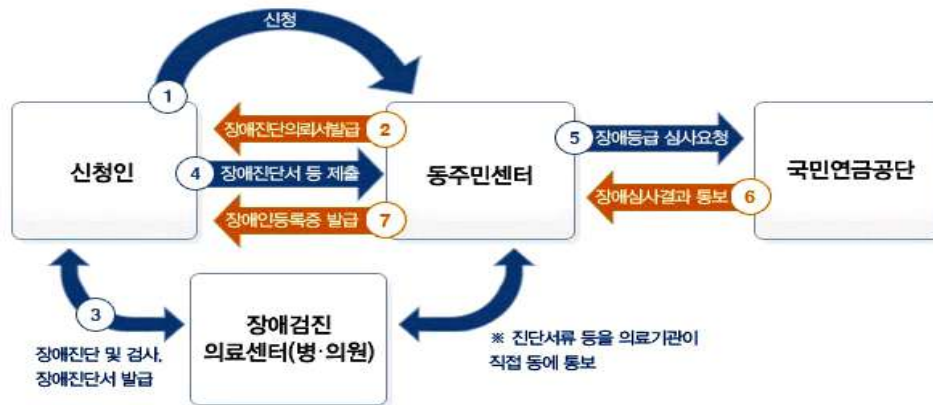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 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 요청

▣ 장애인 등록 절차도



-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담당하며,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장애등급 조정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할 경우 「장애등급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등급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음
- ※ 장애인복지법상의 1~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지원 불가 (진료비 및 검사비(X-ray) 개인부담)

▣ 장애진단 제출서류

1.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 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제출서류 참고사항]

※ 주요 진료 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는 경과기록지 등 입원 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

※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등

☞ 구체적인 소견과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지를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

■ 장애진단서 서식다운 경로

서울시청 → 분야별정보 → 복지·어르신·장애인 → 장애인복지 → 왼쪽 하단 "자료실" → 진단서검색 → 장애진단서 서식다운

■ 장애심사 및 등급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 및 등급을 심사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된 경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

※ 2011. 4. 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 처리기간

- 최초 읍·면·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됨

■ 장애심사 및 등급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 발급대상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 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전국 시·군·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4. 장애등급 측정의 종류 (장애인, 산재, 교통, 보험 등)

■ 장애인 급수 및 등급에 측정방법의 종류

-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여러 종류의 보험(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마다 장애 측정방법이 달라서 혼선을 빚는 등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측정의 방법을 간략히 설명

■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 판정 평가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에 의해 1~6급까지로 장애급수를 평가 (다른 보험과 장애 평가 방법이 다르다)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의 평가방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할 때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며, 장애급수는 해당부분의 의사가 판정

1. 맥브라이드 방식

-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산출에 적용하며, 신체의 장애를 %로 표시
- 미국 정형외과 교수였던 Mc Bride가 1936년에 쓴 노동능력 상실 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애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애를 백분율(%)로 평가

-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애,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장애,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애율이 적용

2. 국가배상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장애 평가방법으로 1급에서 14급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자동차 책임 보험과 평가방법이 같다.)

3. A.M.A 방식

- ① 미국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신체장애의 평가방법
- ② 관절의 각도로써 신체장애의 정도를 표시
- ③ 일반 생명보험, 상해보험에서 장애급수를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사용하는 신체장애 측정방법

[A.M.A식 운동 정상범위(각도로 표시)]

척추의 운동범위

부위	운동의 종류	정상운동범위
목	굴곡, 신전 (앞뒤로 구부림)	135도
	측방굴곡 (좌우로 구부림)	90도
	회전 (좌, 우로 돌리는 각도)	160도
허리	굴곡, 신전 (앞, 뒤로 구부림)	120도
	측방굴곡 (좌, 우로 구부림)	50도
	회전 (좌, 우로 돌리는 각도)	60도

관절의 운동범위

부위	운동의 종류	정상운동범위
어깨관절	전방상거상 (팔을 앞으로 드는 각도)	180도 (굴곡)
	측방상거상 (팔을 옆으로 드는 각도)	180도 (외전)
	후방거상 (팔을 뒤로 올리는 것)	50도 (신전 또는 내전)
	회내, 회외 (어깨관절의 좌우)	180도 (외전)
팔꿈치관절	굴곡, 신전 (구부리고 펴는 것)	140도
	회전	160도
손목관절	배굴	90도 합계
	장굴	90도 120도
대퇴관절	굴곡, 신전 (구부리고 펴는 것)	130도
	내전, 외전	60도
	회내, 회외	90도
무릎관절	굴곡, 신전	150도
발목관절	굴곡, 신전	60도

4. 산업재해 보상법상의 장애 평가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적용하는 장애평가방법과 동일하다.
- 장애를 1급(1474일분)~14급(55일분)까지 14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따른 지급일수에 의한 보상금을 정한다

-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40대 이상 등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나이가 적은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관계로 산재법에서 지급 받는 금액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5. 상해보험의 장애 평가 방법
- 상해보험만의 별도로 정해진 약관에 의해 "후유장애 지급율표"에서 정한 지급비율에 의해 보상금을 정한다
 - 전체 보험금에서 약관에 정해진 지급율(%)의 비율로 보험금을 정하며,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 적용하는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 사고 발생 후 180일을 경과한 후 장애를 기준으로 한다
 - 관절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은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 지침"의 각도 측정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6. 생명보험의 장애 평가 방법
- 상해보험과는 달리 1~6급까지의 생명보험 약관에 의해 정해진 각 급수별 지급기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 생명보험에서 1~6급의 급수별 기준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의 장애 평가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
 - 사고 발생 후 180일을 경과한 후 장애를 기준으로 한다
 - 관절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은 A.M.A 각도 측정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7. 국민연금법상의 장애 평가 방법
- 국민연금법상의 기준에 의해 1~6급까지의 장애를 급수별로 평가하며 다른 보험과 장애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방법에 의해 장애급수가 결정 된다
 - 관절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은 A.M.A 각도 측정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5.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비 지원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 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20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분류	기준액 (원)	내구연한 (1년)	신청기관
지체·뇌병변장애이용 지팡이	20,000	2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홈페이지건강 iN참조)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100,000	5	
- 돋보기	100,000	4	
- 망원경	100,000	4	
- 콘택트렌즈	80,000	3	
- 의안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4.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를

◆ 심장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간질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를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5. 장애진단 판정시기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 **신장 장애**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호흡기·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장루·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겔장루, 전대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 **간 질**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6. 장애인 연금 신청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

■ 소개

-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 보장제도

■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데 단, 4급+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신 분은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음

■ 지급금액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 2014년 6월까지 99,100원 지급, 2014년 7월부터 200,000원 지급
※ 단,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

구 분	연 령	부가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	18세~64세	8만원
	65세 이상	28만원
차상위	18세~64세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초과자	18세~64세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bokjiro.go.kr/pension)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

■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 근거법령 :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지급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 대상자

-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18세 미만

• 지급금액

-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월 3만원을 지급

- 장애인연금은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월20만원(감액적용 없을 시)에서 월28만원까지 지급
(2014년도 7월 기준)

현 행		개 정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월 13만원, 12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경증장애인(월 3만원)		기초급여
장애 아동수당(월 20, 15, 10만원)		경증장애수당(월 3만원)	
장애 아동수당(월 20, 15, 10만원)		장애 아동수당(월 20, 15, 10만원)	

■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 장애인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 시에 제외

■ 지급원칙

•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로 가능

-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로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절차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연금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지급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 필요서류

- 장애상태를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고 병원 방문

■ 장애등급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보건복지부콜센터

각종 할인 및 감면(공제)

◆ 장애인 차량 구입

◎ 지원대상

-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 미만)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지원절차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1~3급) 50%
 - 경증장애인 (4~6급) 30%
- 일반수수료정기검사(15,000 ~ 25,000원)
- 종합검사 (45,000 ~ 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 www.ts2020.kr

◆ 국·공립 공연장 관람료 할인(감면)

◎ 대상시설 및 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 대상공연 : 자체공연 (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감면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및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 감면내용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 규정변경
 - 1~3급 : 50%할인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할인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유선전화요금할인**

- ◎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0호)
 - 사업자별 이용약관 : KT 및 SK브로드 밴드 등
- ◎ 지원내용
 -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할인
 -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내에서 30% 감면
 ※ 시내·외 전화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 없음
- ◎ 지원대상 및 지원대 수
 - 장애인 개인명의로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 지원조건
 -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 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 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함
-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kt전화국,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콜센터 및 고객센터에 신청
- ◎ 구비서류
 - 장애인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발행 장애인복지단체(사회복지법인) 등록증(사본)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사본)

◆ 이동통신요금 할인

- ◎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0호, 2013. 11. 28.)
 - 사업자별 이용약관
- ◎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 LGU+, KT
- ◎ 지원대상
 -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②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제50조제1항(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연금법 제10조(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 지원내용
 - 감면대상 ①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 장애인 전용 요금제 사용 시에도 요금감면 가능
 - 감면대상 ②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단, 월 최대 10,500원 할인)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 지원내용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 이용방법 : 해당 회사에 신청

◆ TV수신료 면제

- ◎ 근거규정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세대주 불문)
- ◎ 지원신청 및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수신료 콜센터 전화(1588-1801)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대행 신청도 가능

◆ 항공요금 할인

-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 감면내용
 - 대한항공 (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 (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ng Class 관리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일부 선사에 한함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전기요금 할인**

- ◎ 할인근거규정 : 한국전력 전기 공급 약관
-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지원내용 8,000원 (정액할인)
- ◎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 방문 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1부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 장애인
- ◎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
- ◎ 신청방법 : 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서류제출
 ※ 해당서류 :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요금할인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함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 신청기간 : 연중
- ◎ 할인내용
 - 취사·난방용 : 평균 12,400원 (동절기 24,000원, 기타 월 6,600원)
 - 취 사 용 : 1,680원 (월별 동일)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 승용자동차 (배기량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지원내용
 - 고속도로 일반차로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가능 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다음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카드(선불 또는 후불)를 삽입
 -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에 통행료 할인
 - ※ 하이패스차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지문인증 방법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음성으로 지문을 인증하도록 안내됨

-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 할인
- 다음의 경우에는 지문 인증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
 - 감면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휴게소 등에서 시동을 끄고 재시동 출발 경우)

⇒ **하이패스용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입력**

- ◎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이용 시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고자 하면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를 구입(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 차량 정보입력 필요)한 후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장애인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 판매업체의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사항 : 장애인의 성명·차량정보·연락처
 - 입력 등 관련사항 문의 : 한국도로공사
 - 장애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를 읍·면·동주민센터장에게 제출 이미 할인카드를 교부받은 장애인은 할인카드를 함께 제출
 - 감면단말기의 유효기간은 할인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처리
 - 감면단말기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읍·면·동주민센터 장에게 신고하고, 감면단말기의 지문입력 사항 변경을 읍·면·동(시·군·구청)의 장에게 신청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
-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허, 하, 호) 제외
-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 가능
- ◎ 할인율 : 50%
- ◎ 할인카드 신청 및 교부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일반차로에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주민센터장에게 제출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분실한 경우 읍·면·동주민센터장에게 할인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신청서에 의거 읍·면·동주민센터장에게 즉시 신고
 -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는 장애인부담으로 4,000원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고 시·군·구(읍·면·동)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교부
 - 할인카드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발송 “한국도로공사 → 시·군·구 → 읍·면·동주민센터 → 장애인에게 발급”
신규 및 재발급에 15~3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 시 즉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장애인 창업(자립)자금 대여**

- ◎ 목 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구분	내 용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331,457 원 이하	2인 가구 2,267,075 원 이하	3인 가구 2,932,280 원 이하	4인 가구 3,598,532 원 이하	5인 가구 4,264,260 원 이하	6인 가구 4,9729,987 원 이하	7인 가구 5,595,717 원 이하	8인 이상 1인 증가시마다 665,727원 씩 증가
장애인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소득인정액은 『201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산정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 자립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용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 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나. 대여조건

》 용자 조건

용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용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 연간소득 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단, 3개월 이상 자동 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다.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용자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 대여를 제한하되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 받는 경우에는 대여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 (단, 기대여 받은 용자금에 대하여 완납 시 대여가능)

라.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1년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마.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용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바.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②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③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④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⑤ 자기개발 훈련비

⑥ 의료비

⑦ 기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①, ②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

◎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가. 대여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나.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 대여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고 「소득·재산 신고서」(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동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및 대여자금의 반환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 받은 서류와 함께 시·군·구로 송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재산조사 및 사업계획서와 조사서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때 자립전망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

※ 소득·재산조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담당하고 대상자 결정은 사업과에서 수행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 통지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 첨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 신청자에게는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결정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보

아울러 대여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사유 등)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

◎ 행정사항

가. 자금 운용

》 시·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용자규모 내에서 운영

》 자립자금용자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 ('03. 4월 ~)

- 보건복지부는 자립자금용자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차보전료(금리차이)를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며

- 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함

나. 용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

- 대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 최초 점검하고, 6개월 경과 후부터 연 1회 이상 점검

- 》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대여금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요청하여 파악하고
- 》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는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은 금융기관의 용자내역 통보에 따라 용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관리 카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다. 업무의 협조

- 》 용자 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재지(사업장)가 상이하고, 원거리인 경우 용자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한다
- 》 이 경우 신청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신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확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의뢰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반환명령

- 》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을 용자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 창업 후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위의 규정을 준용함

마. 전출입 관리

- 》 대여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주소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 관리카드를 즉시 송부하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
-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용자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바. 대여실적 보고

- 》 시·도지사는 자립자금 대여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 국민은행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자립자금대여 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매월 말 현재로 익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